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의안 번호 1425 제출연월일 : 2024. 7. .

제 출 자:대통령

주 문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관(박영재)의 임명에 동의한다.

제안이유

대법관(3인)의 임기가 만료(2024. 8. 1.)됨에 따라 헌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임.

임명동의대상자

○ 성 명: 박 영 재(朴 英 在)

○ 생년월일 : 1969년 2월 5일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xx길 xx, xxx동 xxx호

(서초동, xxxxxxxx)

※ 붙 임

- 1.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부.
- 2.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1부.
- 3.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1부.
- 4.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1부.
- 5.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1부.
- 6.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1부.

대법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1. 임명동의 요청대상자

성 명: 박 영 재 (朴 英 在)

생년월일: 1969. 2. 5.

2. 임명동의 요청사유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3월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8년 동안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탁월한 법리와 공정한 판단력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 온 정통 법관임.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늘 공정하고 온화한 태도로 재판을 진행하면서 어떠한 선입견 없이 성의를 다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사건을 완벽히 파악한 후 구체적 사건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론을 내려 소송관계인들의 만족과 신뢰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게 일체의 선입견 없이 피고인들의 변소 내용을 면밀히 심리한 다음, 원자력발전 기자재 납품계약의 목적물은 납품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일 뿐, 그 전에 이루어진 개발선정품 지정 내용에 따라 확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들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형사피고인들의 무고함을 밝혀냈음.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난간 아래로 집어던져 살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된 발달장애 1급의 18세 피고인에 대하여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치료감호 등의 기능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치료의 난이도와 환경, 지도 교사 및 정신감정인의 의견 등을 심층적으로 심리한 끝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재범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치료감호를 명함으로써 심신상실과 재범의 위험성 및 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별 근로자 수의 차이가 크다면 그 선거구 획정은 투표가치의 평등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결하여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였음.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시 근로자가 직위해제 및 파면 처분에 대해 제기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퇴직급여 등이 감액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며, 징계 재심 절차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하여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하기까지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하였음. 이 판결은 징계처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을 폭넓게 인정하고 징계 재심에서도 절차적 요건이 지켜져야 함을 명백히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장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2015년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법관연수개편TFT 팀장을 맡아 법조일원화 도입 등 사법환경의 변화와 법관연수의 실질적 교육 기능 강화 요청을 고려하여 경력별 연수와 전문교육과정 개편을 통해 연수과정별 연수 프로그램의 차별화와 최적화를 도모하고, 이러닝을 활성화하는

한편, 법관연수운영협의회를 신설하는 등 법관연수제도를 대폭 개편함으로써 현행 법관연수 제도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2016년 젠더법연구회의 참여 하에 법원행정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연구반의 반장을 맡아 경력별 연수 등 법관연수에 성인지 교육을 도입하는 한편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희롱 등 처리절차와 양성평등상담위원 제도를 포함한 피해회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양성평등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등 법원 내 성평등을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소통능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내외적 협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면서 재판연구원 증원, 형사전자소송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등의 구축, 형사공탁제도 개선, 소권 남용 대응 방안 마련,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 제도 도입, 신설 법원의 개원과 각급 법원 청사의 신·증축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법원 구성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여러 사법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법행정 분야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발휘하였음.
- 임명동의 요청대상자는 뛰어난 법률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의 실현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강한 신념, 국민을 위한 봉사 자세와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 등 대법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에 바탕을 둔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조화롭게 포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겸비하고 있어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합니다.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이 력 서
- ㅇ 재직증명서
- ㅇ 졸업증명서
- ㅇ 합격증명서
- ㅇ 경력증명서

이 력 서

성 명: 박 영 재 (朴 英 在)

생년월일: 1969. 2. 5.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xx길 xx, xxx동 xxx호 (서초동, xxxxxxxx)

직 업

2024. 2. ~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1984. 3. ~ 1987. 2. 배정고등학교 졸업

1987. 3. ~ 1991. 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2000. 6. ~ 2001. 6. 미국 뉴욕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 LL.M)

경 력

1990.1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1996. 3. ~ 1998. 2.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1998. 3. ~ 2000. 2. 서울지방법원 판사

2000. 2. ~ 2002. 2.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0. 6. ~ 2001. 6. 국외교육훈련 파견(미국 뉴욕대학)

- 2002. 2. ~ 2004. 2. 대전고등법원 판사
- 2004. 2. ~ 2008. 2. 서울고등법원 판사
- 2004. 2. ~ 2005. 2. 법원행정처 인사제3담당관(겸임)
- 2005. 2. ~ 2005.12. 법원행정처 인사제1담당관(겸임)
- 2006. 1. ~ 2006. 2. 법원행정처 인사제1심의관실 판사(겸임)
- 2008. 2. ~ 2009.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2009. 2. ~ 2012. 2. 사법연수원 교수
- 2012. 2. ~ 2015. 2.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12. 2. ~ 2014. 2.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겸임)
- 2015. 2. ~ 2017. 2.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7. 2. ~ 2023. 2.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2021. 2. ~ 2023. 2.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겸임)
- 2023. 2. ~ 2024. 2. 법원행정처 차장
- 2024. 2. ~ 현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병역

1993. 5. ~ 1996. 2. 공군 대위(원에 의한 전역)

상 훈

○ 해당사항 없음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병역사항신고서
- ㅇ 본인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 ㅇ 병적증명서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ㅇ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
- ㅇ 공직후보자 재산공개확인서
-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목록(관보)
- ㅇ 공직후보자 재산변동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국세·지방세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사항

- o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o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서
- ㅇ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ㅇ 납세(체납)증명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ㅇ 범죄경력조회서

재산관련 부속서류